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변경전 : 하나UBS 파워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전 : 하나UBS 파워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변경내용

1) 펀드명
2) 책임운용전문인력 (조익환 → 허승찬)
3) A, A-E, C-F, C-P, C-P2, W 클래스 신설
4) 투자대상자산 전자단기사채 추가
5) 투자대상자산(주식) 취득한도
6)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7)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8) 환매수수료
9) 비교지수
10) 투자전략 일부 변경
11)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12)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파워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파워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파워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C 수익증권 : 가입제한 없음 2.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 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파워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 가입 제한 없으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종류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3. 종류 C 수익증권 : 가입제한 없음 4.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5. 종류 C-F 수익증권 :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인 경우 6. 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7. 종류 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8. 종류 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9. 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1. 종류 C 수익증권 2. 종류 C-E 수익증권 3. 종류 S 수익증권	제1항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A-E 수익증권 3. 종류 C 수익증권 4. 종류 C-E 수익증권 5. 종류 C-F 수익증권 6. 종류 C-P 수익증권 7. 종류 C-P2 수익증권 8. 종류 W 수익증권 9. 종류 S 수익증권
제17조 (투자대상 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A-이상인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포함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인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18조 (투자대상 자산 취득 한도)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0 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시행일 : 2017년 1월 20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39조 (보수)	제3항	[종류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256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264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종류A-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256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632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종류C-F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256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종류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256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종류C-P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256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종류W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256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제40조(판매수수료)	<신설> <신설>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신설> ③제2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3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 납입급액의 0.15%이내 ③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5항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환매수수료)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파워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A, A-E, C-F, C-P, C-P2, W 클래스 추가></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파워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table><tr><th>명칭(종류)</th><th>펀드코드</th></tr><tr><td>A</td><td>BL431</td></tr><tr><td>A-E</td><td>BL480</td></tr><tr><td>C-F</td><td>BL481</td></tr><tr><td>C-P</td><td>BL482</td></tr><tr><td>C-P2</td><td>BL483</td></tr><tr><td>W</td><td>BL484</td></tr></table></td></tr>
<tr><td rowspan="2">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 A-E, C-F, C-P, C-P2, W 클래스 추가></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tr><th>명칭(종류)</th><th>펀드코드</th></tr><tr><td>A</td><td>BL431</td></tr><tr><td>A-E</td><td>BL480</td></tr><tr><td>C-F</td><td>BL481</td></tr><tr><td>C-P</td><td>BL482</td></tr><tr><td>C-P2</td><td>BL483</td></tr><tr><td>W</td><td>BL484</td></tr></table></td></tr>
<tr><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월 20일
1) 펀드명 변경
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조익환 → 허승찬)
3) A, A-E, C-F, C-P, C-P2, W 클래스 신설
4) 투자대상자산 전자단기사채 추가
5) 투자대상자산(주식) 취득한도 변경
6)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반영
7)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8) 환매수수료 변경
9) 비교지수 변경
10) 투자전략 일부 변경
11)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td></tr>
</table>

<table>
<tr><td></td><td></td><td>12)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td></tr>
<tr><td></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주석 추가)

다.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허승찬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td></tr>
<tr><td></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A, A-E, C-F, C-P, C-P2, W 클래스 추가></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table>
<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
<tr><td>종류 A</td><td>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A-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C-F</td><td>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등 전용 수익증권</td></tr>
<tr><td>종류 C-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td></tr>
</table></td></tr>
</table>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종류 W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나. 종류형 구조 환매수수료 (모든 클래스)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A, A-E, C-F, C-P, C-P2, W 클래스 추가>	**나. 종류형 구조** **환매수수료** (모든 클래스)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종류 / 판매수수료 A / 선취 : 납입금액의 0.30% 이내 A-E / 선취 : 납입금액의 0.15% 이내 C-F / C-P / C-P2 / W /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에 1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한편, 주식(공모주)에 2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1. 주식** 투자비율 : 10% 이하 **2. 채권** (생략)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A- 이상인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포함한다) **7.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1. 주식** 투자비율 : 20% 이하 **2. 채권** (생략)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포함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취득시 신용 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8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에 1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1) 운용전략 <별첨 참고> 6) 비교지수 (KOSPI*9.5%)+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 급(3월-1년) 15%]*90.5%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에 2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1) 운용전략 <별첨 참고> 6) 비교지수 KOSPI 10% + KIS 채권평가 CD 지수 90%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2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해

<table>
<tr>
<td></td>
<td>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10% 수준을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신용등급을 가진 BB+ 이하 C 이상 채권 및 B+이하 C 이상 어음에 투자하고, 주식(공모주)에 10%이하를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9.5%)+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 급(3월-1년) 15%]*90.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공모주)에 10%이하를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td>
<td>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공모주)에 20%이하를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td>
</tr>
<tr>
<td></td>
<td>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A, A-E, C-F, C-P, C-P2, W 클래스 추가></td>
<td>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
<tr><td>종류 A</td><td>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A-E</td><td>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C-F</td><td>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td></tr>
</table>
</td>
</tr>
</table>

	(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등 전용 수익증권
종류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종류 W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3) 환매수수료

부담비율
종류 C, 종류 C-E 및 종류 S
180일미만 : 이익금의 70%

(3) 환매수수료

부담비율
종류 A, A-E, C, C-E, C-F, C-P, C-P2, W, S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모든 클래스)

180일미만 : 이익금의 70%

<A, A-E, C-F, C-P, C-P2, W 클래스 추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모든 클래스)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구분	지급비율					
	A	A-E	C-F	C-P	C-P2	W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0% 이내	납입금액의 0.15% 이내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 A-E, C-F, C-P, C-P2, W 클래스 추가>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종류 A-E	종류 C-F	종류 C-P	종류 C-P2	종류 W
집합투자업자 보수	0.2256	0.2256	0.2256	0.2256	0.2256	0.2256
판매회사 보수	0.3264	0.1632	0.0200	0.5000	0.4000	0.0000
신탁업자 보수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80	0.0180	0.0180	0.0180	0.0180	0.0180
보수 합계	0.6000	0.4368	0.2936	0.7736	0.6736	0.2736

<table>
<tr>
<td></td>
<td>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A, A-E, C-F, C-P, C-P2, W 클래스 추가></td>
<td>
<table>
<tr><td>총보수 및 비용</td><td>0.6000</td><td>0.4368</td><td>0.2936</td><td>0.7736</td><td>0.6736</td><td>0.2736</td></tr>
</tabl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
<tr><th>구 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
<tr><td>종류 A</td><td>91</td><td>223</td><td>369</td><td>801</td></tr>
<tr><td>종류 A-E</td><td>60</td><td>156</td><td>262</td><td>578</td></tr>
<tr><td>종류 C-F</td><td>30</td><td>95</td><td>166</td><td>378</td></tr>
<tr><td>종류 C-P</td><td>79</td><td>250</td><td>438</td><td>997</td></tr>
<tr><td>종류 C-P2</td><td>69</td><td>218</td><td>381</td><td>868</td></tr>
<tr><td>종류 W</td><td>28</td><td>88</td><td>155</td><td>353</td></tr>
</table>
</td>
</tr>
<tr>
<td></td>
<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td>
<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td>
</tr>
</table>

<table>
<tr>
<td></td>
<td></td>
<td>※ 2017 년 1 월 20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table>
<tr><th>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납입요건</td><td>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td></tr>
</table>
</td>
<td>나. 과세
(신설)</td>
<td></td>
</tr>
</table>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12% 세액공제됩니다. 다만,「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비교지수: (KOSPI*9.5%)+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 급(3월-1년) 15%]*90.5%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비교지수: (KOSPI*10%)+(KIS채권평가CD지수*9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9.5%)+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 급(3월-1년)

		15%]*90.5%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이하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이하 현행과 같음)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

		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 UBS 파워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파워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에 1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 (혼합채권형)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에 2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 (혼합채권형)입니다.

<table>
<tr>
<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
<td>
보수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추가>

※ 주석사항
· Class S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
<td>
보수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table>
<tr><th colspan="2">Class</th><th>A</th><th>A-E</th></tr>
<tr><td colspan="2">가입자격</td><td>가입제한 없음</td><td>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td></tr>
<tr><td colspan="2">판매수수료</td><td>납입금액의 0.30% 이내</td><td>납입금액의 0.15% 이내</td></tr>
<tr><td colspan="2">환매수수료</td><td colspan="2">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td></tr>
<tr><td rowspan="6">보수(연, %)</td><td>운용</td><td>0.2256</td><td>0.2256</td></tr>
<tr><td>판매</td><td>0.3264</td><td>0.1632</td></tr>
<tr><td>신탁업자</td><td>0.0300</td><td>0.0300</td></tr>
<tr><td>일반사무</td><td>0.0180</td><td>0.0180</td></tr>
<tr><td>기타비용</td><td>-</td><td>-</td></tr>
<tr><td>총보수비용</td><td>0.6000</td><td>0.4368</td></tr>
</table>
※ 주석사항
· Class C-F, C-P, C-P2, W, S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에 1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입니다.
</td>
<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에 2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 (혼합채권형)입니다.
</td>
</tr>
</table>

	비교지수 : KOSPI*9.5%)+[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회사채(1-3년구간) 55% + BB 급(3월-1년) 15%]*90.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10% 수준을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신용등급을 가진 BB+ 이하 C 이상 채권 및 B+이하 C 이상 어음에 투자하고, 주식(공모주)에 10%이하를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9.5%)+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 급(3월-1년) 15%]*90.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2. 투자전략** <별첨 참고>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주석 추가)	**비교지수 :** KOSPI 10% + KIS채권평가 CD지수 9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2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2. 투자전략** <별첨 참고>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 허승찬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주1) 종류형 C 수익증권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되었으며, 나머지 종류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비교지수: KOSPI 10% + KIS채권평가 CD지수 9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9.5%)+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 15%]*90.5%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별첨>

<변경전>

■ 고객 Needs에 부합한 장기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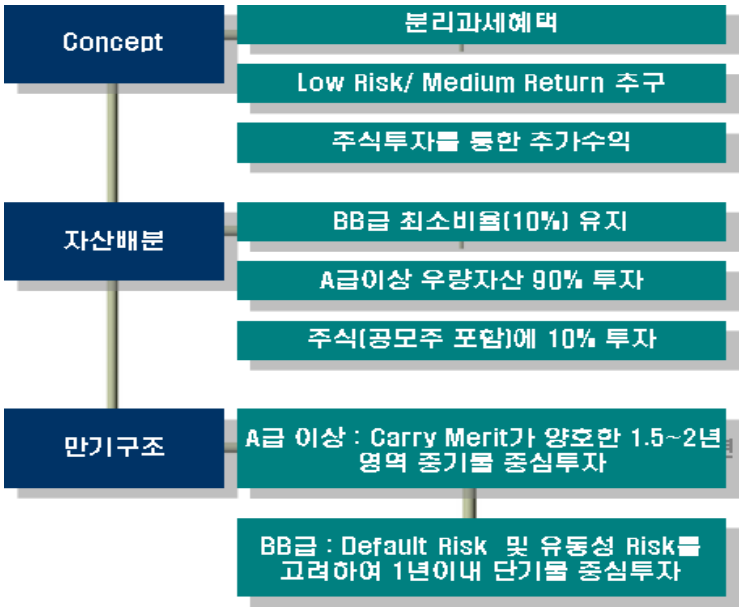
- 정기예금이율 + "Alpha" 수익 목표
- 절대수익추구를 위해 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집중투자
- Medium Risk Taking 전략구사
-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최소화
- 저등급 회사채의 경우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만기 선택

■ 안정적인 이자수익(Income Gain) 확보

- Credit Research를 바탕으로 저평가 자산 발굴에 중점
- 전략적 투자의사 결정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등급별/섹터별/업종별 분석 의견, 투자의사 결정)

■ Enhancement 전략을 통한 + "Alpha"수익 창출

- 동일등급 내 종목별 금리편차를 활용 저평가 기회 탐색



<변경후>

■ 고객 Needs에 부합한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 정기예금이율 + "Alpha" 수익 목표
- 절대수익추구를 위해 우량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에 집중투자
- Medium Risk Taking 전략구사
-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최소화 추구
- 저등급 회사채의 경우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만기 선택

■ 안정적인 이자수익(Income Gain) 확보 추구

- Credit Research를 바탕으로 저평가 자산 발굴에 중점
- 전략적 투자의사 결정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등급별/섹터별/업종별 분석 의견, 투자의사 결정)

■ Enhancement 전략을 통한 + "Alpha"수익 창출 추구

- 동일등급 내 종목별 금리편차를 활용 저평가 기회 탐색

■ Portfolio 전략

Concept	Low Risk / Medium Return 추구
	주식투자를 통한 추가 수익 추구
자산배분	A급 이상 우량 채권,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에 60% 이상 투자
	주식(공모주 포함) 20% 이하 투자
만기구조	Duration 0.2년 ~ 0.5년 투자전략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가족사랑짱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K-1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운용역 변경

3. 대비표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월 20일 책임운용역 변경 (김현지 → 오현정)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김현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오현정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김현지	**4.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오현정